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615호
- 나. 제 안 자 : 민병주 의원(찬성자 15명)
- 다. 제 안 일 : 2026년 4월 3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4월 7일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에 관해 제5조제2항제8호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확장 가능성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골목길재생 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 중 현행 ‘그 밖에’를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사업시행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u>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② (생략) ③ <u>시장</u> 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 또는 구청장</u> ----- ----- -----.

나. 검토 내용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내용 관련”(안 제5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8호는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 중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탄력적 운영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 재량의 과도한 확대 및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내 용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u>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u>그 밖에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골목길주민협의체 지원 주체 확대 관련”(안 제7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은 골목길주민협의체¹⁾가 골목길 재생 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골목길재생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가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은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수행 체계와 다소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음
- 현행 조례 제8조²⁾에서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나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등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조문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에 골목길주민협의체의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제 사업 시행 주체와 조례 규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

1)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지역 내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조직으로 해당 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골목길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2)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골목길재생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 현행 조례 및 개정안 비교 〉

구분	내 용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구청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내용의 범위를 골목길재생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체계에 부합하도록 지원 주체를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